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16
----------	------

발의연월일 : 2023. 6. 1.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박주용 의원, 양은숙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관내 범죄예방과 달성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6조)

라.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마. 직무 관련 전·현직 종사자로서 비밀준수의 의무 규정(안 제8조)

바. 사업과 관련하여 모범적으로 수행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달성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제5조(사업) ① 군수는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포상)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2021.7.20. 일부개정, 2022.1.21. 시행)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감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